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 업 설 명 서

농정과

(청사관리) (P - 20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9월 ○ 위 치 :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
○ 사업규모 : 사무용품 구매(책상, 서랍, 의자 각 3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2021. 8. 20.자 인사발령(증원)에 따른 책상 등 사무용 가구 구입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000**	**19,490**	**17,600**			**1,890**	**13,490**	
국 비								
도 비								
시 비	6,000	19,490	17,600			1,890	13,49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1. 8. 20.자 인사발령(증원)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제5조, 제8조
근거내용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 별표1”에 의한다.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인력 증원 및 각종 보조사업 사무보조 인력확보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
○ 책상, 서랍, 의자 등 각 3개씩 구매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청사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합 계	=	1,890	
		· 책상 : 200,000원*3개	=	600	
		· 서랍 : 160,000원*3개	=	480	
		· 의자 : 270,000원*3개	=	81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9월 : 사무용 가구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직원휴게실 냉난방기 1대, 냉장고 1대 구입	
2021년	○ 대회의실 의자(58개) 및 테이블(14개) 구입 교체 ○ 대회의실 냉난방기 설치(1대)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6,000	5,748	-	252	
2021년	17,600	17,189		411	8.20일기준 실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정팀장 장오규	담당자	행정7급 정회선	전화	2806

(경기도 농민전진대회 개최 지원) (P - 207)

□ 지방보조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10월

○ 공모여부 : 비공모

○ 보조사업자 : 김포시농민회 대표자 : 최병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경기도 농민 전진대회를 통해 다채로운 농민 활동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농특산물 생산 증대 및 농업인 자긍심 함양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2회 추경 (D)	3회 추경 (E)		
계		**55,600**	**50,000**		**5,600**	**55,600**	
시 비		50,000	50,000			50,000	
자부담		5,600			5,600	5,600	

□ 예산 증감사유

○ 예산의 일괄 집행 등 효율성 및 탄력적 대응을 위해 자부담액 반영

○ 예산과목(통계목) 변경**(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 민간행사사업보조)**

※ 김포시농민회가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신속 추진 및 효율성 제고

□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근거내용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관내 농업인 자긍심 고취 및 경기도 농민 화합도모

○ 농업인단체에서 직접 주관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계	시비	자부담	비 고
경기도 농민 전진대회 개최 지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합 계	55,600	50,000	5,600	통계목 변경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 사업보조) 및 자부담 추가
		- 일 시 : 2021. 10. 23.~24. - 장 소 : 대곶면 약암리 약암호텔(예정) - 참여인원 : 약 400명 - 지원단체 : 전농 경기도연맹 김포시농민회 - 사업내용 : 제15회 경기농민 전진대회 개최 지원 - 산출근거 : ·숙 박 비 : 30,000원*400명 = 12,000,000원 ·식 비 : 8,000원*400명*3회 = 9,600,000원 ·체험음식 : 8,000원*400명 = 3,200,000원 ·다 과 : 3,000원*400명*2회 = 2,400,000원 ·내빈만찬 : 20,000원*60명 = 1,200,000원 ·시군 네트워킹 지원 : 150,000원*8회 = 1,200,000원 ·승마체험 : 12,425원*400명 = 4,970,000원 ·테이블 등 대여 : 8,430,000원*1회 = 8,430,000원 ·홍보비, 방역비 등 : 12,600,000원*1식 = 12,600,000원	12,000 9,600 3,200 2,400 1,200 1,200 4,970 8,430 12,600	10,800 8,640 2,880 2,160 1,080 1,080 4,473 7,587 11,300	1,200 960 320 240 120 120 497 843 1,300	
	합 계		-50,000	-50,000		전액 감액
	201-03 행사운영비	소 계	-22,650	-22,650		
		·현수막 : 80,000원*30개 ·텐트 : 50,000원*25동 ·의자 : 1,500원*500개 ·테이블 : 15,000원*50개 ·음향 및 무대설치 : 4,000,000원 ·이벤트 행사비 : 12,000,000원 ·상패등 행사용품 구입 : 1,500,000원	-2,400 -1,250 -750 -750 -4,000 -12,000 -1,500	-2,400 -1,250 -750 -750 -4,000 -12,000 -1,500		
	301-09 행사실비 지원금	소 계	-27,350	-27,350		
		·숙박비 : 30,000원*500명*1박 ·식비 : 8,000원*500명*3식 ·간식비 : 3,500원*100명	-15,000 -12,000 -350	-15,000 -12,000 -35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정팀장 장오규	담당자	농업7급 강남선	전화	2809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P - 20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대상자 : 김포시 청년후계농 선정자

○ 사업규모 : 17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38,709**	**114,300**	**158,400**			**-44,100**	**-24,409**	
국 비	97,096	80,010	110,880			-30,870	-17,086	
도 비								
시 비	41,613	34,290	47,520			-13,230	-7,323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국비 변경내시 부담 기준에 따른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제1항, 제2항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후계농에게 초기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규농업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영농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

○ 청년후계농(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에게 최대 3년까지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계	-44,100	독립경영 연차별 차등지급
		·정착지원금: 1,000,000원*3명*9개월 =	-27,000	
		900,000원*1명*11개월 =	-9,900	
		800,000원*1명*9개월 =	-7,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2월 ~ 3월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심의(1차, 2차 심의)
- 2021. 4월~12월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 매달 지급
- 2021.12월 :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6명 선발 - 10월 : 영농정착지원금 62,700천원 집행 - 11월 : 영농정착지원금 46,800천원 집행	
2020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4명 선발 - 6월 : 영농정착지원금 81,000천원 집행 - 10월 : 영농정착지원금 25,800천원 집행	
20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5명 선발 - 6월 : 영농정착지원금 100,500천원 집행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21,271	109,500	-	11,771	
2020년	138,709	106,800	-	31,909	
2021년	158,400	100,500		57,900	8.20일기준 실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정팀장 장오규	담당자	농업7급 강남선	전화	2809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스마트팜) 조성공사) (P - 20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12월　　○ 위　　치 : 하성면 석탄리 1047 외 1필지
○ 사업규모 : 2,400㎡(2개소, 스마트 온실)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관내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시설(온실) 농업 운영 경험과 영농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후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한 역량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600,000**		**-600,000**		
국 비		0		300,000		-300,000		
도 비								
시 비		0		300,000		-300,00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기 위해 전액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제1항, 제2항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청년 농업인의 영농기술을 사전에 습득하고 초기 투자의 위험성 방지 및 농업경영 역량 제고
○ 비축농지 상에 스마트온실을 조성하여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독립경영 기반마련과 안정적 시설 운영 역량 제고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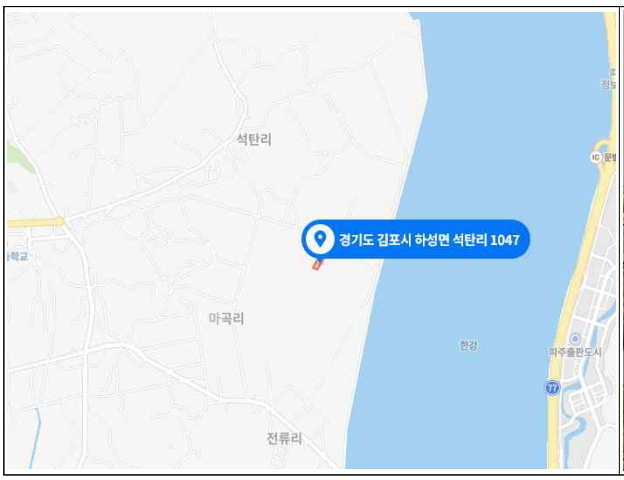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스마트팜) 조성공사	401-01 시설비	·지반성토 등 정비, 스마트온실 하우스(1,200㎡) 시공 : 300,000,000원*2개소 =	-60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2월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공모 및 신청
- 2021. 2월 :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업대상지 선정
- 2021. 4월 ~ 7월 : 설계용역
- 2021. 6월 : 관련법 협의(문화재보호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 2021. 6월 ~ 7월 : 임차(청년농업)인 모집 및 선정
- 2021. 8월 : 공유재산 심의
- 2021. 9월 ~ 11월 : 착공
- 2021.12월 ~ 2022. 1월 : 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정팀장 장오규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성원	전화	2809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스마트온실) 조성사업) (P - 20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12월　　○ 위　　치 : 하성면 석탄리 1047 외 1필지
○ 사업규모 : 2,400㎡(2개소, 스마트 온실)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관내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시설(온실) 농업 운영 경험과 영농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후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한 역량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20,000**				**820,000**	**820,000**	
국 비		300,000				300,000	300,000	
도 비								
시 비		520,000				520,000	520,00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한국농어촌공사로 위탁하여 시설공사 추진
○ 전년대비 자재비 및 인건비 대폭 상승과 온실유형(10-연동-2) 선택으로 경영실습 임대농장 공사비 증액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제1항, 제2항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청년 농업인의 영농기술을 사전에 습득하고 초기 투자의 위험성 방지 및 농업경영 역량 제고
○ 비축농지 상에 스마트온실을 조성하여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독립경영 기반마련과 안정적 시설운영 역량 제고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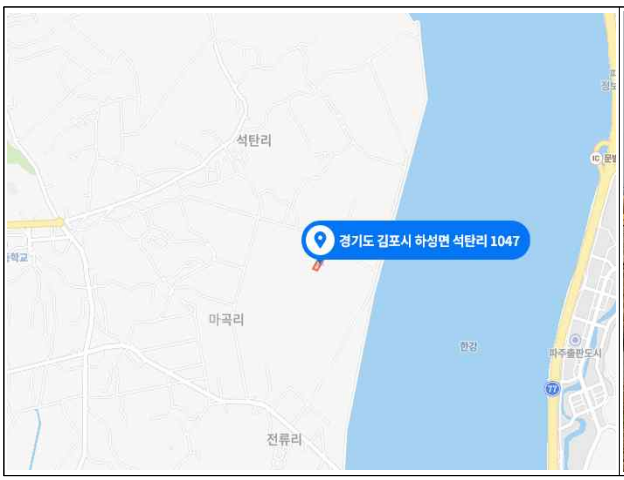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스마트온실) 조성사업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농어촌공사 일괄 위탁 사업비 : 410,000,000원*2개소 =	82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2월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공모 및 신청
- 2021. 2월 :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업대상지 선정
- 2021. 4월 ~ 7월 : 설계용역
- 2021. 6월 : 관련법 협의(문화재보호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 2021. 6월 ~ 8월 : 임차(청년농업)인 모집 및 선정(2명)
- 2021. 8월 : 공유재산 심의
- 2021. 9월 ~ 11월 : 착공
- 2021.12월 ~ 2022. 1월 : 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정팀장 장오규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성원	전화	2809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P - 20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자녀 대학생

○ 사업규모 : 20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인자녀(대학생)의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000**	**2,500**				**2,500**	**-15,500**	
국 비								
도 비								
시 비	18,000	2,500				2,500	-15,50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농업인 자녀(대학생) 대출이자보전액 예산편성 누락액 추경 반영

○ 농업인 자녀(대학생)의 기 대출(융자)금 조기상환으로 대출이자보전액 대폭 감소

□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유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이차차액 보전금 : 3,125원*200명*4분기 =	2,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2월 :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접수
- 2021. 3월 : 농업인자녀 대학생 지원대상 경기도 선정
- 2021. 3월 ~ 12월 : 분기별 농업인자녀 학자금 무이자융자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농업인자녀 대학생 193명(1~4분기) 15,108천원 지급	
2020년	·농업인자녀 대학생 193명(1~4분기) 6,052천원 지급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6,000	15,108	-	10,892	
2020년	18,000	6,052	-	11,948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정팀장 장오규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성원	전화	2809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P - 20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대상자 : 김포시 여성농업인

○ 사업규모 : 여성농업인 19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지역 여성농업인 보건·문화 이용비 지원으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1,800**	**38,400**	**38,000**			**400**	**-3,400**	
국 비								
도 비	10,032	9,216	9,120			96	-816	
시 비	23,408	21,504	21,280			224	-1,904	
기 타	8,360	7,680	7,600			80	-680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여성농업인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생활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건강 및 문화생활 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농업인 건강증진 및 생산성 향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바우처 카드: 200,000원*2명*80%	=	32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2월 ~ 3월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접수 및 선정
- 2021. 4월 : 바우처 지급(1차, 2명 선정 제외)
- 2021. 5월 : 여성농업인 추가 선정(4명)
- 2021. 9월 : 바우처 지급(2차, 4명)
- 2021.12월 :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사업대상: 181명(개인당 20만원, 자부담 4만원)	
2020년	·사업대상: 209명(개인당 20만원, 자부담 4만원)	
2021년	·사업대상: 188명(개인당 20만원, 자부담 4만원)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6,960	28,960	-	8,000	
2020년	36,640	36,640	-	-	
2021년	30,400	30,400		-	8.20일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정팀장 장오규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성원	전화	2809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운영비) (P - 20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지역 노령화에 따른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근로자 등 합법적으로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농번기 부족한 일손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2,000**			**-2,000**	**0**	
국 비								
도 비								
시 비		0	2,000			-2,000	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농가 인력확보가 어려워 전액 감액

○ 코로나19 극복대비 농촌일손돕기(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 대체가능

□ 법적근거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근거내용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여 농업 가구에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인력 해소

○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MOU 체결 등 사업운영비 및 홍보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합 계	=	-2,000	
		· 홍보물 및 안내서 제작 : 500,000원	=	-500	
		·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비	=	-1,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3월 : 추진계획수립
- 2021. 4월 ~ 5월 : MOU 체결
- 2021. 6월~10월 :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실시
- 2021. 7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취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정팀장 장오규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성원	전화	2809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성립전)) (P - 20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12월 ○ 대상자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08농가(화훼 58, 친환경농산물납품 50)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위기극복 및 가계생활 안정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24,000**		**104,000**	**14,000**	**6,000**	**124,000**	
국 비		124,000		104,000	14,000	6,000	124,000	
도 비								
시 비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기간 연장으로 보조인력 인건비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근거내용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2) 농업·어업·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가계생활 안정자금(영농) 지원으로 농가경영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 3,000,000원 * 1명 *2개월 =	6,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4월 ~ 8월 : 화훼, 친환경 농산물 공급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신청
- 2021. 4월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1. 5월 : 제외대상자 이의신청(1차)
- 2021. 6월 : 심사 및 영농지원금 지급(1차)
- 2021. 8월 : 제외대상자 이의신청(2차)
- 2021. 8월 : 심사 및 영농지원금 지급(2차)
- 2021. 6월 ~ 11월: 화훼 및 친환경 농산물 공급농가 바우처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1년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 1차 선정(52농가)-농협선불카드 지급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년	118,000	8,441		109,559	8.20일기준 실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정팀장 장오규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성원	전화	2809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 (P - 20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12월 ○ 대상자 : 6개 읍·면 고령농업인

○ 사업규모 : 2,470명(읍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야간 보행환경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 교통안전 물품을 지원하여, 농업·농촌 고령인의 삶의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4,460**			**4,560**	**39,900**	**44,460**	
국 비								
도 비		44,460			4,560	39,900	44,460	
시 비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 추가 선정자(2,470명) 교통안전물품 보급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조례」	제5조의4
근거내용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4. 고령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농촌지역에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피해율 최소화

- 지원대상 : 읍면 거주 고령농업인
- 지원품목 : 야광조끼 2,470개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야 광 조 끼 : 18,000원 * 2,217명 ≒	39,9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1. 3월 : 교통안전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 2021. 4월 ~ 5월 : 교통안전 지원사업 추가 신청 및 선정
- 2021. 8월 ~ 9월 : 교통안전물품 보급
- 2021.10월 : 정산실시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정팀장 장오규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성원	전화	2809

(덕포진누리센터 부지 매입) (P - 20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9. ~ 12월 ○ 위 치 : 대곶면 신안리 18-7번지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95㎡(소유자 : 신안1리마을회, 지목 : 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예술체험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32,650**				**232,650**	**232,650**	
국 비								
도 비								
시 비		232,650				232,650	232,65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제5조 제1항(도농교류활동의 지원)
근거내용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농교류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6항)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육성 2. 농어촌 체험교육 및 도농자매결연 3.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양성 4. 농특수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및 홍보 5.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홍보·조사·연구 6. 그밖에 도농교류 활동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방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덕포진누리센터 미운영에 따른 신안1리마을회 부지 매입 건의 및 농어촌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예술체험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
○ 덕포진누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덕포진누리센터 부지 매입	401-01 시설비	·토지매입비 : 1㎡당 토지매입비 470,000원×전체면적 495㎡ =	232,6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7월 ~ 8월 : 덕포진누리센터 활성화를 위해 신안1리마을회에서 부지 매입 건의
- 2021. 8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1. 9월 ~ 12월 : 대상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정팀장 장오규	담당자	농업6급 구주현	전화	2807

(토양개량제 지원) (P - 20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위　　치 : 관내 농지(통진읍, 대곶면)

○ 사업규모 : 796.2톤(39,809포/20kg)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23,744**	**148,182**	**123,744**	**32,448**		**-8,010**	**24,438**	
국 비	76,316	87,600	76,316	13,954		-2,670	11,284	
도 비	23,714	24,766	23,714	2,387		-1,335	1,052	
시 비	23,714	35,816	23,714	16,107		-4,005	12,102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공동살포 사업량 확정에 따른 예산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지법」	제21조제1항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폐화석) 공급으로 지력을 유지하고,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높임으로써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

- 공급량 : 39,809포/20kg(규산질 27,246포, 석회질 10,396포, 폐화석 2,167포)
- 사업비 : 115,032천원

○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토양개량제 미살포 및 방치문제 해결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

- 사업량 : 27,625포
- 사업비 : 33,150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토양개량제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공동살포비 - 사업량 : 27,625포 - 지원단가(1포/20kg 당) : 1,200원 (국비 400원, 도비 200원, 시비 600원) - 산출내역 : (당초) 1,200원*34,300포 = 41,160천원 (변경) 1,200원*27,625포 = 33,150천원	=	-8,01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1월 ~ 12월 : 사업 신청 접수
- 2021. 2월 : 사업량 확정
- 2021. 3월 ~ 6월 :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 실시
- 2021. 6월 ~ 12월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사업량 : 규산질 65,811포, 석회질 9,431포, 패화석 1,030포 · 지급액 : 250,644천원 - 토양개량제 : 210,934천원 - 공동살포비 : 39,710천원	
2020년	· 사업량 : 규산질 26,231포, 석회질 7,548포, 패화석 769포 · 지급액 : 123,553천원 - 토양개량제 : 96,095천원 - 공동살포비 : 27,458천원	
2021년	· 사업량 : 규산질 27,246포, 석회질 10,396포, 패화석 2,167포 · 지급액 : 95,000천원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71,935	250,644	-	21,291	
2020년	123,744	123,553	-	191	
2021년	156,192	95,000		61,192	8.20일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업지원팀장 한규	담당자	농업7급 박정미	전화	2810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P - 20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위 치 : 관내 농가

○ 사업규모 : 4,992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 안전망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51,081**	**526,477**	**479,973**			**46,504**	**75,396**	
국 비								
도 비	101,490	107,990	107,990			0	6,500	
시 비	236,821	286,868	251,990			34,878	50,047	
기 타	112,770	131,619	119,993			11,626	18,849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보험가입자 증가 및 보험료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근거내용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농업인 고령화 및 농작업의 기계화로 농작업중 발생되는 농기계사고 및 신체상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인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업인 보호 및 사회안전망 제공 등을 위해 보험가입 필요

○ 보험가입 대상 및 보험료 증가에 따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비 추가반영으로 보험료 지원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307-06 보험금	-지원대상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20세이상의 농업인 등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종사 농업인 -보 험 료 : 유형별 보험료 상이 -사업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중 일부 지원	=	34,87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1월 ~ 12월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홍보 및 사업추진
- 2021. 12월 : 보험료 지급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296,575천원/6,214건 - 농기계종합보험 : 102,886천원/918건 - 농업인안전보험 : 193,689천원/5,296건	
2020년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335,506천원/6,291건 - 농기계종합보험 : 129,321천원/1,014건 - 농업인안전보험 : 206,185천원/5,277건	
2021년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329,089천원/6,182건 - 농기계종합보험 : 122,893천원/913건 - 농업인안전보험 : 206,196천원/5,269건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18,607	296,575	-	22,032	
2020년	338,311	335,506	-	2,805	
2021년	359,980	329,089		30,891	8.20일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업지원팀장 한규	담당자	농업7급 박정미	전화	2810

(기본형 공익직불제) (P - 21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위　치 : 관내 농업인

○ 사업규모 : 5,09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834,000**	**8,623,000**	**8,836,000**			**-213,000**	**-211,000**	
국 비	8,834,000	8,623,000	8,836,000			-213,000	-211,000	
도 비								
시 비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대상자 자격 검증으로 인해 자격미달자 제외 또는 감액 등 변경내시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근거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과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301-11 기타보상금	· 대상농업인 - 기존 : '16~19년 중 직불금(쌀,밭) 1회이상 수령자 - 신규 : 후계농, 전업농 또는 농업인 요건 충족자 등 · 대상농지 : '17~19년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 실적이 있는 농지 · 사 업 량 : 5,091명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 면적직불금 : 논·밭, 진흥·비진흥 등에 따라 면적 구간별 지급	=	-213,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1. 1월 ~ 3월 : 사업설명·홍보
- 2021. 4월 ~ 5월 : 등록신청서 제출
- 2021. 6월 ~ 9월 : 신청내용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 등록내용 변경사항 신청 및 신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이행점검
- 2021. 9월 ~ 10월 : 신청자 자격 대량검증
- 2021.11월 ~ 12월 : 지급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쌀고정직불금 : 4,735농가 / 3,841ha / 3,927,944천원 · 밭농업직불금 : 1,875농가 / 586ha / 323,479천원	
2020년	· 기본형 공익직불금 : 5,271농가 / 4,117ha / 8,829,792천원	
2021년	· 추진중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315,000	4,251,423	-	63,577	
2020년	8,834,000	8,829,792	-	4,208	
2021년	8,836,000	-		8,836,000	8.20일기준 실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업지원팀장 한규	담당자	농업8급 김수지	전화	2812

(상토 등 농업지원사업 전산시스템 구축) (P - 21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9. ~ 12월 ○ 위 치 : 14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사업규모 : 1식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김포시 못자리상토 신청 등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000**				**30,000**	**30,000**	
국 비								
도 비								
시 비		30,000				30,000	30,00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2022년 1월 부터 못자리상토 등 농업지원사업 신청 접수시 적용을 위하여 하반기 개발 착수 필요

□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5호
근거내용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제5호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못자리상토 등 농업지원사업 신청서의 자동 출력으로 농업인들의 신청 불편을 해소
○ 읍면동 농정 업무 부하 해소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상토 등 농업지원사업 전산시스템 구축	207-02 전산개발비	- 사업내용 : 못자리상토 등 농업지원사업 신청 및 집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산출근거 : · 전산시스템 개발비 22,000,000원 x 1식 . 서버 구입 8,000,000원 x 1대	=	3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1. 9월 : 시스템 개발 발주
- 2021.12월 : 시스템 시험가동 및 사업비 집행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업지원팀장 한규	담당자	농업8급 김수지	전화	2812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P - 21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12월　　○ 위　치 : 관내 친환경 농산물 재배지

○ 사업규모 : 106.52ha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 영농활동 유지를 위한 장려금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6,329**	**61,159**	**66,329**			**-5,170**	**-5,170**	
국 비								
도 비	19,899	18,348	19,899			-1,551	-1,551	
시 비	46,430	42,811	46,430			-3,619	-3,619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사업 신청접수 후 사업량 및 사업비 확정에 따른 예산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근거내용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耕種農)에 대한 보조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 대비 생산비 증가와 수량감소에 따른 소득의 불확실성으로 실천농가 확산 어려움

○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 유지와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장려금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301-11 기타보상금	· 사업내용 : 사업 신청일~2021. 10. 31.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필지에 장려금 지급 · 사 업 량 : 106.52ha · 품목별 지급 단가 -곡 류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천원/ha -채소·과채·특작류·기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천원/ha -과 실 류 : 유기 1,500천원/ha, 무농약 1,380/ha *품목, 재배 면적 등에 따라 농가별 보조금 상이	=	-5,17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3월 ~ 4월 : 사업 신청
- 2021. 5월 ~ 10월 : 이행실태 점검
- 2021. 11월 : 사업대상 확정
- 2021. 12월 : 장려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농 가 수 : 109농가 · 지급 면적 : 73.3ha · 지급 금액 : 47,464천원	
2020년	· 농 가 수 : 91농가 · 지급 면적 : 101ha · 지급 금액 : 59,281천원	
2021년	· 추진 중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7,470	47,464	-	6	
2020년	66,329	59,281	-	7,048	
2021년	66,329	-		66,329	8.20일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업지원팀장 한규	담당자	행정9급 전병욱	전화	2811

(4월 이상저온 피해 재해복구비) (P - 21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9.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39.3ha/45농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봄철 저온 피해 발생 농가의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1,950**				**31,950**	**31,950**	
국 비								
도 비		12,780				12,780	12,780	
시 비		19,170				19,170	19,17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봄철 이상저온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건 복구지원비 확정으로 예산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근거내용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봄철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분야 피해 발생에 따라 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 지급

- 피해규모 : 45농가(배 44, 블루베리 1), 39.3ha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4월 이상저온 피해 재해복구비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 피해면적 : 39.3ha · 농 가 수 : 45농가 · 총지급액 : 106,500천원 - 국비 74,550천원, 도비 12,780천원, 시비 19,170천원 ※국비는 D-brain을 통해 별도 지급	=	31,9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4월 : 저온피해 농가 피해신고 접수
- 2021. 5월 ~ 6월 : 현장확인 실시
- 2021.11월 : 피해복구비 지급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농업지원팀장 한규	담당자	농업7급 박정미	전화	2810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P - 21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관내 초·중·고·특수학교(68,70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우수농산물 등의 공급으로 급식의 질 향상 및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488,000**	**2,722,000**	**3,188,000**			**-466,000**	**1,234,000**	
국 비								
도 비	744,000	1,361,000	1,594,000			-233,000	617,000	
시 비	744,000	1,361,000	1,594,000			-233,000	617,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른 학교 등교(급식) 일수 감소가 예상되어 예산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친환경급식 등 지원 조례	제5조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근거내용	친환경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으로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① 시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개정 2016.10.31>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관내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급식 재료 공급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추경 요구액	비 고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 급식지원 : 232원*68,706명*29일	=	-466,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1월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 사업 추진 계획수립
- 2021. 2월 ~ 12월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 사업 공급량 확인 및 월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친환경 농산물 79개소/1476톤 (농산물 902톤, 쌀 574톤)	
2020년	- 친환경 농산물 85개소/363톤 (농산물267톤, 쌀 96톤)	
2021년	- 친환경 농산물 85개소/435톤 (농산물 258톤, 쌀 177톤)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549,499	2,179,978	260,000	369,521	
2020년	1,748,000	944,632	250,000	553,368	
2021년	3,438,000	926,653		2,511,347	8.20일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유통팀장 김종무	담당자	농업7급 홍순주	전화	2814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 (P - 21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5.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4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로컬푸드 직매장에 일관된 포장 전시로 직매장 상품 가치를 높여 로컬푸드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확대 및 농가 소득 확대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3,300**	**107,378**		**48,486**		**58,892**	**54,078**	
국 비								
도 비	7,995	16,107		7,273		8,834	8,112	
시 비	18,655	37,582		16,970		20,612	18,927	
기 타	26,650	53,689		24,243		29,446	27,039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른 경기도 증액 내시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근거내용	도지사는 지역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수산 식품을 원활히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수의 지역 농수산업인이 참여하는 생산단지 조성사업 2.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수산물 가공활성화사업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로컬푸드 납품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으로 상품가치를 높이고 홍보를 통해 소비자 재구매 유도

○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 고
로컬푸드 납품 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직매장 포장재 : 14,723,000원*4개소*50% =	29,44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8월 : 사업대상자 선정
- 2021. 9월 ~ 11월 : 사업추진
- 2021.12월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지원농가 :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45호 - 지원내용 : 포장재 : 33만7천개	
2020년	- 지원농가 :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104호 - 지원내용 : 포장재 : 44만개	
2021년	- 지원농가 :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100호 - 지원내용 : 포장재 : 68만개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9,100	29,100	-	-	
2020년	26,650	26,650	-	-	
2021년	24,243	24,243		-	8.20일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유통팀장 김종무	담당자	농업7급 홍순주	전화	2814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 (P - 21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으로 상시 모니터링 및 원산지 의무표시 정착홍보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000**	**17,250**	**15,000**			**2,250**	**2,250**	
국 비								
도 비	4,500	5,175	4,500			675	675	
시 비	10,500	12,075	10,500			1,575	1,575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원산지 의무표시 정착을 위한 감시원 상시 모니터링 활성화

□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근거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홍보·계몽과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수입 농축수산물의 증가에 따라 원산지표시 정착을 통한 관내 농수산업 보호 및 소비자 알권리 충족

○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운영하여 원산지 표시 정착 및 홍보 활동 경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 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지원	301-12 기타보상금	· 운영지원 : 50,000원*9일*5명	=	2,2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1월 : 사업계획수립
- 2021. 2월 :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채용
- 2021. 3월 ~ 12월 :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비 매월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1,926개소 지도 점검	
2020년	- 1,346개소 지도 점검	
2021년	-1,604개소 지도 점검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000	6,000	-	-	
2020년	15,000	7,700	-	7,300	
2021년	15,000	8,600		6,400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유통팀장 김종무	담당자	농업7급 홍순주	전화	2814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P - 21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7.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전통주 제조업체 지원으로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및 농산물 소비 촉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2,000**				**22,000**	**22,000**	
국 비								
도 비		6,600				6,600	6,600	
시 비		11,000				11,000	11,000	
기 타		4,400				4,400	4,400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른 경기도 증액 내시

□ 법적근거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
근거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전통주 제조업체에 온라인 배송시스템, 포장재 개발, 홍보비 등을 지원하여 업체의 경영비 부담 절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이전재원)	· 전통주 홍보 및 마케팅 1식 22,000,000원*80%	=	17,6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7월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1. 9월 : 사업대상자 선정
- 2021. 9월 ~ 11월 : 사업추진
- 2021.12월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유통팀장 김종무	담당자	농업8급 곽지선	전화	2815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설립) (P - 21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 위 치 : 양촌읍 금포로 1705-1(누산리 1063-9)
○ 사업규모 : 연면적 3,720㎡(지상3층), 부지면적 12,522㎡(시유지 8,862㎡, 국유지 3,660㎡)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학교급식으로 친환경 우수식재료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적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우수농식품의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270,934**	**4,386,066**	**2,786,066**			**1,600,000**	**1,115,132**	
국 비	0	2,057,000	2,057,000				2,057,000	
도 비								
시 비	3,270,934	2,329,066	729,066			1,600,000	-941,868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인해 (식재료)지원대상이 유치원까지 확대되어 물류피킹장 건축 연면적 증가
○ 국제적인 철근 공급부족으로 관급자재 철근가격 30% 등 원자재 가격 인상 및 간접노무비 비율 증가
○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 용역 완료에 따른 공사업체 선정공고 및 착공을 위한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 제5조 제4항
근거내용	제4조(학교급식 대상) 1.『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21.03.23.)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완료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9.11월	2020. 3월	-	2020. 2월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식재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물류피킹장 연면적 확장 및 공사비(원자재 및 노무비 등) 상승분 반영
○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의식비 및 각종수수료와 수용비 등의 부대비용 지급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학교급식물류 지원센터 설립		합 계	=	1,600,000	
	401-01 시설비	·공사비(설계비, 공사비, 공사예비비)	=	1,583,750	공사원가 증액
	401-03 시설부대비	·조달청 수수료 등 공사부대비용 : 공사비 등 6,500,000,000원×0.25%	=	16,2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15. 8월 :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방안」 학술연구용역 완료
- 2018.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8월 ~ 2019 9월 :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설립 부지 선정 및 설립계획 수립
- 2019.12월 : 군사협의 심의
- 2020. 1월 ~ 2월 :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020. 3월 :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 2020. 6월 : 대상부지 소유권 이전
- 2020. 8월 : 국비 39억 확보(행정안전부-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 2020.10월 ~ 11월 : 건축기획 심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20.10월 ~ 2021. 9월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 2021. 1월 ~ 10월 :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1. 4월 ~ 10월 :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 인·허가,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 2021.10월 ~ 12월 : 경기도지방재정투자 재심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2021.12월 ~ 2022. 2월 : 공사업체 계약업무 조달청 위탁계약
- 2022. 2월 ~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G)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향후투자 (G)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계		**9,500,000**	**3,270,934**	**4,386,066**	**2,786,066**			**1,600,000**	**1,843,000**	
공정별	설계비	384,000	194,310	189,690				189,690		
	보상비	3,000,000	3,000,000							
	공사비	4,556,000	-	2,713,000	2,702,795			10,205	1,843,000	
	감리비	260,000	-	260,000	83,271			176,729		
	부대비	16,250	-	16,250				16,250		
	기타 예비비	1,283,750	76,624	1,207,126				1,207,126		

○ 연도별 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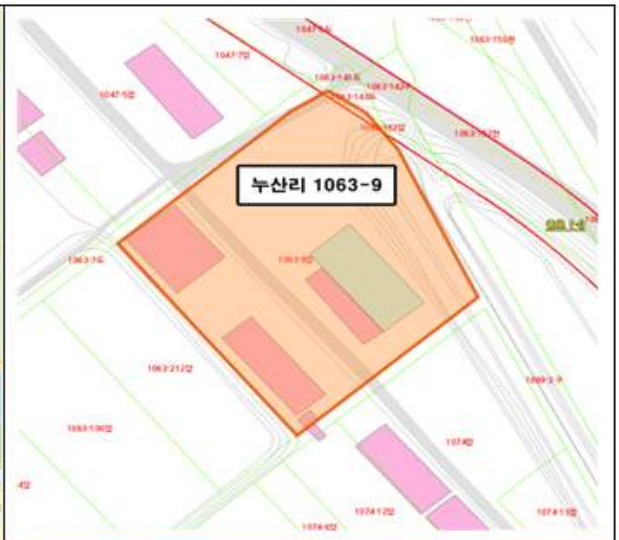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9,500	3,271	4,386	1,843	
국비	3,900	-	2,057	1,843	
시비	5,600	3,271	2,329	-	

□ 최근 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협의(8월), 대상부지 선정(8월), 설립 계획수립(9월), 감정평가(12월)	
2020년	시의회 월례조회 자료제출(2월), 경기도 부서협의(2월), 예산반영(3월), 시 관계부서 사전검토(4월), 대상부지 소유권 이전(6월), 공유수면(국유지) 점용협의(8월)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공(1월), 선진지 급식지원센터 벤치마킹(2월), 진출입로 토목공사(4월), 인력운영 계획수립(6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세부협의(7월)	

□ 위치도 및 현장사진

<table>
<tr><td>위치도</td><td>
</td><td>
</td></tr>
<tr><td>현장사진</td><td>
</td><td></td></tr>
</table>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급식지원팀장 황경애	담당자	임기제 다급 이두열 임기제 라급 김부경	전화	2571 2572

(우수식재료 공급사업 등 추진) (P - 21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2.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관내 학교 85개교(초·중·고·특수학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학교급식 식자재의 정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을 실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00**	**39,167**	**10,000**			**29,167**	**29,167**	
국 비								
도 비								
시 비	10,000	39,167	10,000			29,167	29,167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식재료 시료 구매 및 안전성검사 의뢰 비용에 따른 예산 신규편성

○ 2학기 공동식단 행사 추진에 따른 김포 친환경인증 포도 현물지원을 위한 예산 추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근거내용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기능의 관리와 학교급식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친환경 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시료채취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친환경적인 식재료의 생산·수급 관리 6. 관내 생산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의 학교 소비 증대 도모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21년 관내 가공식품 업체 등 학교 공급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의뢰비 및 시료구입비

○ 친환경인증 포도농가의 소득증대 및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을 위한 현물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우수 식재료 공급사업 등 추진		합계	=	29,167	
	201-01 사무관리비	소계	=	5,240	
		· 안전성검사 시료 구입 - 가공식품 시료비 100,000원*3개 업체*2회 - 수산물 시료비 610,000원*1개 업체*4회 · 안전성검사 : 1,100,000원*2회	= = =	 600 2,440 2,200	
	201-03 행사운영비	소계	=	23,927	
		· 친환경인증 포도 : 총 2,698kg * 7,400원 * 1회 · 배송 및 소분수수료 : 총액29,970천원 * 13.2%	= =	19,970 3,957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8월 ~10월 : 수산물 안전성검사 시행
- 2021. 8월 : 학교급식 김포 친환경인증 포도 현물지원 계획수립
- 2021. 9월 : 학교 참여여부 조사 및 신청접수
- 2021. 9월 ~ 10월 : 학교 배송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등교 여부에 따라 사업 변경될 수 있음.
- 2021.10월 ~ 12월 : 가공식품 안전성검사 시행
- 2021.11월 : 학교급식 김포 친환경인증 포도 현물지원 만족도 조사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영양(교)사 식단교육 16회	
2020년	· 영양(교)사 온라인 조리교육 영상 10회 제작	
2021년	-추진중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1,000	10,821	-	179	
2020년	12,500	4,774	-	7,726	
2021년	12,500	661		11,849	8.20일기준 실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급식지원팀장 황경애	담당자	임기제 라급 김부경 해양수산9급 김희진	전화	2572 5235

(학교급식 우수 가공식품 차액 지원) (P - 21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관내 중·고·특수학교 38개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매 차액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실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7,722**	**294,557**	**420,796**			**-126,239**	**116,835**	
국 비								
도 비								
시 비	177,722	294,557	420,796			-126,239	116,835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년별 비대면 수업 전환 및 교차등교로 인한 학교급식 축소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근거내용	**제5조(지원방법)**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코로나-19 확산에 1학기 비대면 수업 실시로 학교급식 축소에 따른 우수 가공식품 공급물량 감소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학교급식 우수 가공식품 차액지원	301-12 기타보상금	계		-126,239	본예산 대비 30% 감액
		·중 학 교 : -73,478,980원(23개교)	=	-73,479	
		·고등학교 : -50,723,730원(14개교)	=	-50,724	
		·특수학교: -2,036,100원(1개교)	=	-2,036	

□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대 상	학교수	학생수	연간사용예정량(kg) ※ 기존 조사량 대비 30% 감량	지원단가	금 액	비 고
중 학 교	23	14,582	86,175(기존)-25,853(감량)=60,323	1,100원 ~10,200원	-73,479	가공식품 22개 품목 및 관내 가공식품 (국간장,고추장,된장,진간장, 부침가루,튀김가루,빵가루, 소면,쌀조청,고춧가루, 튀김유,스위트콘,청국장, 밀가루,전분,당면,설탕, 매실청,토마토케첩,마요네즈, 관내생산품 7종)
고등학교	14	10,909	60,344(기존)-18,103(감량)=42,241		-50,724	
특수학교	1	219	2,647(기존)-794(감량)=1,853		-2,036	
총 계	38	25,710	149,166(기존)-44,750(감량)=104,416	-	-126,239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2월 : 2021년 차액지원 품목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 2021. 2월 : 학교대상 사업 안내
- 2021. 3월 ~ : 차액지원사업 실시(학년별 교차 등교)
- 2021. 7월 ~ : 델타변이로 인한 전면 온라인 수업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중 학 교 : 81,503,213원(16개교) ·고등학교 : 79,473,667원(12개교) ·특수학교 : 4,832,260원(1개교)	
2020년	·중 학 교 : 65,002,206원(18개교) ·고등학교 : 81,862,488원(14개교) ·특수학교 : 3,945,800원(1개교)	
2021년	·중 학 교 : 49,614,300원(18개교) ·고등학교 : 54,448,940원(14개교) ·특수학교 : 2,858,740원(1개교)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15,541	165,809	-	149,732	
2020년	177,722	150,810	-	26,911	
2021년	420,796	106,921		313,875	8.20일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정과	급식지원팀장 황경애	담당자	임기제라급 이혜미 해양수산9급 김희진	전화	2573 523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 업 설 명 서

축수산과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P - 21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학교

○ 사업규모 :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총 64개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관내 초중고 학생에 대한 양질의 축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과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로 축산농가 경영수지 개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16,000**	**646,000**	**760,000**			**-114,000**	**30,000**	
국 비								
도 비	308,000	323,000	380,000			-57,000	15,000	
시 비	308,000	323,000	380,000			-57,000	15,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축소에 따라 사업량 조정

○ 국도비 변경 내시[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6706(2021.07.26.)호]

□ 법적근거

근거법령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근거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 도모

○ 수입 축산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내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o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 -9,500원 * 12월 = -114,000	

○ 지원단가

(단위 : 원/kg)

구 분	한우(등급)				육우(등급)			돼지	닭	계란	돈가스	가공품
	1+	1	2	3	1	2	3					
보조 금액	10,430	9,130	5,700	700	4,570	3,280	700	1,120	630	630	670	9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2~2021.01 : 추진계획수립
- 2021.01~2021.12 : 사업집행(연중 계속)
- 2021.12~2022.01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60개교 / 44,861명 지원	
2020년	61개교 / 47,874명 지원	
2021년	64개교 / 47,669명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40,000	586,167	53,833	-	
2020년	487,833	272,729	70,000	145,104	
2021년	830,000	296,877		533,123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동물위생팀장 배종선	담당자	행정6급 김정하	전화	2892

(가금농가경쟁력 지원사업) (P - 21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12.　　○ 위　　치 : 양계농가

○ 사업규모 : 14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양계농가 환경개선을 통한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 생산 및 축산 경쟁력 강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200**	**58,552**	**88,552**			**-30,000**	**41,352**	
국 비								
도 비	1,720	5,855	8,855			-3,000	4,135	
시 비	6,880	23,421	35,421			-12,000	16,541	
기 타	8,600	29,276	44,276			-15,000	20,676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가금농가경쟁력지원사업 보조내시 변경

- 경기도 축산정책과-12214(2021.8.11.)

□ 법적근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제2항
근거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계사 내 재난방지, 환기시설, 난방시설 등 환경을 개선하여 폐사율 감소를 도모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개선 시설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가금농가경쟁력 강화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	·지하수정수 1개소 X 30,000,000원 X 50% =	-15,000	자부담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3. : 사업계획수립
- 2021.03. ~ 2021.05. : 사업신청 접수 및 선정
- 2021.05. ~ 2021.12. : 사업집행
- 2021.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사업규모 : 28개소 사업내용 : 축사단열처리, 개방·무창형 환기시설, 열풍기 설치지원, 지붕스프링쿨러 설치지원 집행액/예산액 : 51,600천원/71,400천원	
2020년	사업규모 : 2개소 사업내용 : 환기시설, 열풍기 설치지원, 집행액/예산액 : 4,600천원/8,600천원	
2021년	사업규모 : 14개소 사업내용 : 에어쿨시설, 환기시설, 열풍기, 마킹비, 안개분무기 설치지원 집행액/예산액 : 10,000천원/44,276천원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1,400	51,600		19,800	
2020년	8,600	4,600		4,000	
2021년	44,276	10,000		34,276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축산팀장 최근식	담당자	행정8급 김동민	전화	2829

(축산ICT융복합 확산사업) (P - 21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9월 ~ 12월 ○ 위 치 : 통진읍, 월곶면

○ 사업규모 : 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축산분야 ICT 시설기반 구축으로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등 최적 사육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48,006**	**382,130**				**382,130**	**-65,876**	
국 비	134,402	114,639				114,639	-19,763	
도 비	26,880	15,285				15,285	-11,595	
시 비	62,721	61,141				61,141	-1,580	
기 타	224,003	191,065				191,065	-32,938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경기도 축산정책과-8209('21.5.31.))

□ 법적근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근거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원격제어 구축 등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조건을 통해 양질의 축산물 생산과 경쟁력 강화

○ 사료급이기, 냉동기, 자동착유기, 환기시설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계		191,065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사료급이기,냉동기: 98,830,000원*1개소*50% · 자동착유기·급이기,환기시설 : 283,300,000원 * 1개소 * 50%	= =	49,415 141,6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기본추진계획수립
- 2021.06. : 「사업대상자 선정(경기도) / 국도비 보조금 내시
- 2021.09. ~ 2021.12. : 사업추진
- 2021.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사업규모 : 1개소 사업내용 : 자동급이기 집행액/예산액 : 0천원/75,000천원	
2020년	사업규모 : 4개소(이월1개소) 사업내용 : 자동급이기, 발정탐지기, 환기시설 등 집행액/예산액 : 0천원/409,333천원	
2021년	사업규모 : 4개소(이월) 사업내용 : 자동급이기, 발정탐지기, 환기시설 등 집행액/예산액 : 233,143천원/409,333천원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5,000	-	75,000	-	
2020년	409,333	-	409,333	-	
2021년	409,333	233,143		176,190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축산팀장 최근식	담당자	행정6급 서원일	전화	2818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P - 21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9월 ~ 12월 ○ 위 치 : 대곶면, 하성면

○ 사업규모 : 4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기반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52,712**	**786,050**				**786,050**	**-66,662**	
국 비								
도 비	213,178	78,605				78,605	-134573	
시 비	213,178	314,420				314,420	101,242	
기 타	426,356	393,025				393,025	-33,331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경기도 축산정책과-9645('21.6.25.)

□ 법적근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근거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축사 환경(온도, 습도, 화재 등)관리시설 개선, 환경 개선(환경관리기. 환풍기 등) 등을 통한 동물복지 향상으로 축산업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계	393,025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402-02	· 사육환경개선: 3개소*97,675,00원 = · 사육환경개선:1개소*100,000,00원 =	293,025 10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기본추진계획수립
- 2021.06. : 「사업대상자 선정(경기도) / 국도비 보조금 내시
- 2021.09. ~ 2021.12. : 사업추진
- 2021.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예산액 : 97,900천원 - 사업량 : 사육환경개선 6개소 - 집행액 : 97,900천원/1개소	
2020년	- 사업규모 :11개소(이월5개소)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등 - 집행액/예산액 : 99,002천원/926,356천원	
2021년	- 사업규모 : 10개소(이월)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등 - 집행액/예산액 : 446,415천원/740,969천원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97,900	97,900	500,000		
2020년	926,356	99,002	740,969		
2021년	740,969	510,968		230,001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축산팀장 최근식	담당자	행정6급 서원일	전화	2818

(유기동물 포획차량 유지관리) (P - 21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위　　치 : 김포시
○ 사업대상 : 차량 1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유기동물, 길고양이 관련 민원 신속 대응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000**	**7,000**	**5,000**			**2,000**	**2,000**	
국 비								
도 비								
시 비	5,000	7,000	5,000			2,000	2,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차량 노후화에 따른 유기동물 포획 차량 정비 필요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 제1항
근거내용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유기동물, 길고양이 관련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차량 유지관리 예산 증액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유기동물량 포획차량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201-02	· 차량 유지관리비 : 2,000,000원	=	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2~2021.01 : 기본계획 수립
- 2021.01~2021.12 : 사업집행(연중 계속)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사업내용 : 유기동물 포획차량 유지비 5,000,000(예산액) / 4,975,660(집행액)	
2020년	사업내용 : 유기동물 포획차량 유지비 5,000,000(예산액) / 4,929,460(집행액)	
2021년	사업내용 : 유기동물 포획차량 유지비 5,000,000(예산액) / 3,256,220(집행액)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000	4,976		24	
2020년	5,000	4,929		71	
2021년	5,000	3,256		1,744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동물위생팀장 배종선	담당자	해양수산9급 박원표	전화	2893

(가축방역 관리) (P - 21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 사업규모 :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평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으로 가축전염병 피해 확산 방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4,570**	**157,740**	**156,620**			**1,120**	**3,170**	
국 비								
도 비								
시 비	154,570	157,740	156,620			1,120	3,17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가축방역상황실 노후물품 교체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
근거내용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가축방역상황실 노후된 기자재(상황실 영상회의용 탁자) 교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가축방역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상황실 영상회의용 탁자 1,120,000원	=	1,12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9. : 구입계획 수립
- 2021.09. : 상황실 영상회의용 탁자 구입
- 2021.10. :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상황실 운영 10개월 창고 1개소 및 방역차량 7대 유지관리 방역약품 등 구입·배부 109,847천원	
2020년	상황실 운영 7개월 창고 1개소 및 방역차량 8대 유지관리 방역약품 등 구입·배부 109,540천원	
2021년	상황실 운영 10개월 창고 2개소 및 방역차량 8대 유지관리 방역약품 등 구입·배부 27,757천원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52,530	149,783		2,458	
2020년	154,570	149,783		2,747	
2021년	156,620	54,357		102,263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가축방역팀장 박용준	담당자	수의7급 신문주	전화	5952

(살처분 보상금) (P - 21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1.1.~12.31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44 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가축전염병 감염축·의심축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0,000**	**6,200,000**		**2,950,000**	**845,000**	**2,405,000**	**6,150,000**	
국 비	40,000	4,960,000		2,360,000	751,111	1,848,889	4,920,000	
도 비	5,000	620,000		295,000	93,889	231,111	615,000	
시 비	5,000	620,000		295,000		325,000	615,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0~2021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수립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제1항
근거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21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살처분 농가 보상금

※ 살처분 보상금 신속 지급을 위한 국도비 교부분 성립 전 예산 수립 후 2회추경 편성
추가 내시분 및 시비 미수립분 3회추경 편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가축전염병 등 감염축 살처분 보상	=	2,40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2 : 성립전예산수립 및 보상금 지급(50%)
- 2021.06 : 성립전예산수립 및 보상금 지급(발생농가 30%, 예살농가 85%, 소규모농가 25호 100%, 오염물건 폐기 4농가, 100%)
- 2021.03~2021.12 : 가축질병(ASF, 구제역·AI, 결핵, 브루셀라 등) 발생관련 살처분 보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보상완료: 소 결핵병 발생농가 1호, 기립불능소 1호, 구제역 백신 부작용 폐사 가축 8호 ASF 발생농가 50% 선지급	
2020년	보상완료: ASF 발생농가 23호, 구제역 백신 후 부작용, 폐사 가축 7호 AI 발생 전업농가 9호 27% 가지급	
2021년	보상완료: 소규모농가 25호, 오염물건 폐기농가 4호, 부화장 1호, 육계농가 1호, 구제역 백신 부작용 폐사 가축 1호 AI 발생 전업농가 13호 가지급 (발생농가 30%, 예살농가 85%)	8.20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7,468,300	8,135,218	9,333,081	1	
2020년	9,383,081	9,369,292	-	13,789	
2021년	3,795,000	3,172,686		622,314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가축방역팀장 박용준	담당자	수의7급 홍혜영	전화	2827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예방백신 접종시술비) (P - 21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위 치 : 우제류(소, 염소) 사육농가

○ 사업규모 : 5,000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백신접종이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소 50두 미만 소규모농, 염소사육농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0,500**	**62,000**	**70,500**	**-8,500**		**-**	**-8,500**	
국 비	35,250	31,000	35,250	-4,250		-	-4,250	
도 비	5,287	4,650	5,287	-637		-	-637	
시 비	29,963	26,350	29,963	-3,613		-	-3,613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동일 사업비 내 편성목 변경

-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구입(재료비)

※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예산 집행잔액 활용계획 제출 및 승인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근거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21년 전업농 백신 접종시술 수요 감소되어,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잔여예산 발생

※2020년 일제접종 3회 → 2021년 일제접종 2회

☞ 농림부 집행잔액 활용 계획에 의거,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로 변경 사용하여 축산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계	-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206-01 재료비	·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	26,000	
	301-12 기타보상금	·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	-26,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사업계획 수립
- 2021.01~2021.12 : 축산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 · 4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상반기),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배부
  - · 10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하반기),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배부
- 2021.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해당없음(2020 신규사업)	
2020년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 지원 10,693두	
2021년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 지원 1,939두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해	당	없	음	
2020년	70,500	53,465	-	15,325	
2021년	62,000	9,695		52,305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가축방역팀장 박용준	담당자	수의7급 신문주	전화	5952

(동물보호관리) (P - 21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 200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100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적정 보호 관리를 통한 동물복지 실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29,500**	**278,000**	**239,000**			**39,000**	**48,500**	
도 비	68,850	83,400	71,700			11,700	14,550	
시 비	160,650	194,600	167,300			27,300	33,950	

□ 예산 증감사유

○ 유기·유실동물 개체 수 증가, 길고양이 등 동물 관련 민원 증가

○ 2021년 동물보호 분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 제15조제6항
근거내용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유실·유기동물과 피학대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적정 보호 관리를 통한 동물보호의식 고취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로 개체 수 조절 및 주민 갈등 해소

○ 동물보호센터의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동물복지 실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계	=	39,000	
유기동물 구조보호	301-01 기타보상금	· 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 200마리*120천원	=	24,000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100마리*150천원	=	1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2~2021.01 : 추진계획 수립
- 2021.01~2021.12 : 사업집행(연중 계속)
- 2021.12~2022.01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유기동물 구조 보호 70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727마리	
2020년	유기동물 구조 보호 738마리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923마리	
2021년	유기동물 구조 보호 595마리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400마리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01,000	201,000	-	-	
2020년	229,500	229,415	-	85	
2021년	239,000	118,109		120,891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동물위생팀장 배종선	담당자	해양수산9급 박원표	전화	2893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P - 21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유실·유기동물 8마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유기·유실동물 입양 활성화를 통한 유기·유실동물 보호 여건 개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00**	**2,700**	**1,500**			**1,200**	**-300**	
국 비	1,200	1,350	750			600	150	
도 비	540	450	250			200	-90	
시 비	1,260	900	500			400	-360	

□ 예산 증감사유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수요 증가

○ 2021년 동물보호 분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제4조 제4항
근거내용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유기·유실동물 입양 시에 필요한 부대비용(진료비, 미용비 등) 지원으로 입양 활성화 유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301-12 기타보상금	· 입양비 지원 : 150천원 * 8마리	=	1,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2~2021.01 : 추진계획 수립
- 2021.01~2021.12 : 사업집행(연중 계속)
- 2021.12~2022.01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입양비 지원 : 43두 / 지원금액 : 4,250,700원	
2020년	입양비 지원 : 24두 / 지원금액 : 1,556,000원	
2021년	입양비 지원 : 12두 / 지원금액 : 1,473,430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1,500	4,250	-	27,249	
2020년	3,000	1,556	-	1,444	
2021년	1,500	1,473		27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동물위생팀장 배종선	담당자	행정7급 김태광	전화	2844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원사업) (P - 21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5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생성된 가축매몰지에 대한 원상복구 및 재활용 지원 등 안정화를 위한 친환경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700,000**	**118,750**	**118,750**	**0**	**0**	**0**	**-3,581,250**	
국 비	1,480,000	47,500	47,500	0	0	0	-1,432,500	
도 비	333,000	10,688	10,687	0	0	1	-322,312	
시 비	1,887,000	60,562	60,563	0	0	-1	-1,826,438	
기 타	0	0	0	0	0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본예산 국·도비 보조내시서에는 도비 보조금이 10,687천원으로 보조 내시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보조내시서 재 공문 발송시 도비 부담금을 10,688천원으로 자금교부 하였기에 도비부담금은 1천원 증액, 시비 부담금 1천원을 경감하고자 함.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지원 등) 제1항
근거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구제역, AI 등) 발생으로 생성된 매몰지를 악취 및 가축전염병 차단 방지 등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농가 매몰지 대상으로 조기에 매몰지 소멸 및 발생 농가 매몰지 사후관리 등 매몰지 안정화 도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원사업	206-01 재료비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원사업비 도비 1천원 증액, 시비 1천원 감액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2021.02 : 가축매몰지 소멸처리 계획
- 2021.06~2021.07 : 가축매몰지 병원체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
- 2021.07~2021.09 : 가축매몰지 이설·소멸처리 승인 요청, 업체선정 심의회 개최 및 용역(조달청) 요청
- 2021.09~2021.12 : 매몰지 소멸처리 시 악취저감제 등 구입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매몰지 3개소 소멸화 처리 완료	
2020년	매몰지 11개소 소멸화 처리 완료	
2021년	가축매몰지 소멸을 위한 바이러스 검사 의뢰 : 14개소[구제역 1개소, AI 13개소]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850,000	598,926	250,000	1,074	
2020년	3,950,000	322,777	3,607,213	20,010	
2021년	3,725,963	923,239		2,802,724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가축방역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용준	전화	2825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P - 21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위 치 : 축산 농가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축산농가에 CCTV, 방역시설 설치지원으로 농장 방역시설 개선을 통한 병원체 유입차단 및 임상증상 관찰을 통한 조기신고 유도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80,000**	**56,000**	**30,000**	**△7,000**		**33,000**	**-524,000**	
국 비	174,000	16,800	9,000	△2,100		9,900	-157,200	
도 비	26,100	2,520	1,350	△315		1,485	-23,580	
시 비	147,900	14,280	7,650	△1,785		8,415	-133,620	
기 타	232,000	22,400	12,000	△2,800		13,200	-209,600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농림부 추가 예산 배정 및 중점방역 관리지구 축산농가 동절기 대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필요

□ 법적근거

근거법령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내용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가금농가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등에 관한 CCTV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함.

○ 가금 및 양돈농가 울타리, 전실 및 소독시설 등 농가 시설지원 강화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공 통		산출내역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CCTV 등 방역인프라 33,000,000원 × 1개소 × 60% =	19,800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9. : 기본계획수립
- 2021.01. : 추진계획수립
- 2021.02.~2021.12. : 사업추진
- 2021.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 15개소 지원	
2020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 6개소 지원	
20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 8개소 지원, 가금농가 사업진행중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18,200	52,626	4,800	60,774	
2020년	352,800(이월액포함)	22,020	0	330,780	
2021년	343,800(이월액포함)	232,737		107,063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가축방역팀장 박용준	담당자	수의7급 이정희	전화	2826

(가축방역 강화사업) (P - 21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12.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공수의사 동원 336회, 시료배송 138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 공수의사 동원수당 : 방역현장 공수의사(가축 방역관)를 동원으로 시 방역대처능력 향상
- 검사시료 배송비 : 정밀진단검사시료 배송비 지원으로 방역업무공백 최소화 및 업무효율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7,830**	**45,380**	**37,830**			**7,550**	**7,550**	
국 비								
도 비								
시 비	37,830	45,380	**37,830**			7,550	7,55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20~`21 고병원성AI 발생 관련 전국 특별방역기간 연장 및 방역 강화를 위한 가금농가 검사량 증가로 시료 배송비 증액 필요

○ 김포 돼지 재입식에 따라, 출하돼지 임상검사서 발급비용 증액 필요

□ 법적근거

근거법령	수의사법	제30조, 제22조
근거내용	제30조(지도와 명령) 시·군·구청장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개업 공수의사를 동원할 수 있다.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제1항 시장·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전국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방역 강화조치로 농가 환경 및 가금 검사량 증가에 따른 시료 배송비 예산 증액 필요

○ 김포시 ASF 살처분농가 재입식 완료되어, 자돈 출하 등 돼지 이동에 대한 임상예찰 발급비용 지급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계	7,550	
가축방역 강화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검사시료 배송비 55,000원 × 20회 × 4개월 =	4,400	
	301-12 기타보상금	· 공수의사 증명서 발급비 90,000원 × 35회 =	3,1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 : 사업계획 수립
- 2021.01~2021.12 : 사업 추진
- 2021.12 :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2020년	공수의사 동원수당 28,890천원, 시료배송비 6,490천원 등 29,640천원 집행	
2021년	공수의사 동원수당, 시료배송 등 16,630천원 집행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7,830	29,640	0	8,190	
2020년	37,830	35,380		2,450	
2021년	37,830	22,708		15,122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수의7급 이정희	전화	2826

(동물보호관리 - 자체) (P - 21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동물보호관리를 위한 물품 등 구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유기동물 증식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민원을 조기에 포획·구조하여 효율적인 유기동물 관리도모. 또한 동물보호 홍보 및 동물등록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을 통한 동물복지 실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000**	**10,000**	**7,000**			**3,000**	**3,000**	
시 비	7,000	10,000	7,000			3,000	3,000	

□ 예산 증감사유

○ 동물보호 업무 관련 동물등록증 발급 운영 물품, 포획틀, 구조용 소모품 등 구입 필요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제4조 제3항
근거내용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동물보호 홍보 현수막과 유기동물 포획·구조를 위한 소모품을 구입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업무추진

○ 동물등록증 발급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여 동물등록 업무의 원활한 수행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계	**3,000**	
동물보호관리 (자체)	201-01 사무관리비	· 동물보호관리 홍보현수막 제작 : 70,000원 * 10개 =	700	
		· 유기동물 포획틀 구입 : 650,000원 * 2개 =	1,300	
		· 유기동물 포획·구조 소모품 구입 : 500,000원 =	500	
		· 동물등록증 발급 운영 물품구입 : 500,000원 =	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2~2021.01 : 기본계획 수립
- 2021.01~2021.12 : 사업집행(연중 계속)
- 2021.12~2022.01 : 사업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유기동물 포획틀 및 동물보호 관련 업무 소모품 구입	
2020년	유기동물 포획틀 및 동물보호 관련 업무 소모품 구입	
2021년	유기동물 포획틀 및 동물보호 관련 업무 소모품 구입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8,300	7,922		378	
2020년	7,000	6,690		310	
2021년	7,000	5,118		1,882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동물위생팀장 배종선	담당자	해양수산9급 박원표	전화	2893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P - 21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6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소요되는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17,000**	**317,000**	**317,000**			**-**	**-100,000**	
국 비	208,500	158,500	158,500			-	-50,000	
도 비	31,275	23,775	23,775			-	-7,500	
시 비	177,225	134,725	134,725			-	-42,5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전체예산 증감 없으나 특별방역기간 통제초소 설치운영을 위한 통계목 간 예산 조정 필요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근거내용	□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년 ~ '21년 특별방역기간 연장 및 AI 연속 발생으로 통제초소 설치 증가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계		-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방역요원 인건비: 3,000,000원×8명×약 3.2개월	=	77,389	
	206-01 재료비	· 소독약 및 방역용품 구입비	=	△77,389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0~11 : 기본계획수립
- 2021.01 ~ 2021.12 : 사업 추진
- 2021.12 :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295,291천원 집행	
2020년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346,323천원 집행	
2021년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229,129천원 집행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17,000	295,291	0	21,709	
2020년	417,000	346,323	0	70,677	
2021년	317,000	229,129		87,871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수의7급 이정희	전화	2826

(선제적초소 설치사업) (P - 22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7개소(거점소독시설 1개소, 선제적초소 6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5만수 이상(상시 사육규모) 산란계 농장에 선제적 초소 6개소 및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차단방역 강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58,548**	**254,828**	**254,828**			**-**	**-3,720**	
국 비	0	0	0			-	-	
도 비	77,564	76,448	76,448			-	-1,116	
시 비	180,984	178,380	178,380			-	-2,60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전체 예산 증감 없으나 통계목별 예산 조정 필요함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근거내용	□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1년 특별방역기간 AI 연속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시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등 증액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공 통		계	-	
선제적초소 설치사업	206-01 재료비	· 소독약 및 방역용품 구입비 =	-12,000	
	201-02 공공운영비	· 전기세, 상하수도요금 등 초소 공공요금 =	1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0~11 : 기본계획수립
- 2021.01 ~ 2021.12 : 사업 추진
- 2021.12 :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산란계 6개농가초소, 거점소독시설 1개소 등 운영 276,702천원 집행	
2020년	산란계 6개 농가초소, 거점소독시설 1개소 운영 218,860천원 집행	
2021년	산란계 6개 농가초소, 거점소독시설 1개소 운영 178,716천원 집행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65,000	276,702	0	188,298	
2020년	258,548	218,860	0	39,688	
2021년	254,828	178,716		76,112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수의7급 이정희	전화	2826

(법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사업) (P - 22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2백만수(육계농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 가금 법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으로 관내 양계농가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여 농가피해 최소화
- 저병원성AI, 뉴캣슬, IB 등 가금류 가축전염병 근절 및 청정화로 생산성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000**	**40,000**	**30,000**			**10,000**	**25,000**	
국 비								
도 비								
시 비	15,000	40,000	30,000			10,000	25,00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육계농가에 법정전염병(IB) 예방백신 지원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여 농가 경영안정 도모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제1항(비용의 지원)
근거내용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닭 전염성 기관지염(IB)은 제3종 법정전염병으로 발생시 빠른 전파와 높은 폐사율(약30%)로 사육농가에 출하전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며 백신지원으로 농가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

○ 육계농가 연 사육수수(800,000수*5회전/평균=4,000,000수)중 2,000,000수 분량의 백신 지원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 사육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백신지원사업	206-01 재료비	· IB백신 : 5원/수 × 2,000,000수 =	1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사업계획수립
- 2021.01. ~ 2021.11.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 2021.11. ~ 2021.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2020년	저병원성 AI-ND 예방 백신 256,849수 분량 지원으로 15,000,000원 집행	
2021년	저병원성 AI-ND 예방 백신 430,000수 분량 지원으로 30,000,000원 집행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020년	15,000	15,000	0	0	
2021년	30,000	30,000		0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수의7급 이정희	전화	2826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P - 22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축산농가

○ 사업규모 : 우제류 전축종(소,돼지,염소,사슴) 136,350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구제역(법정 접종 의무) 예방백신 구입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35,620**	**121,477**	**135,620**	**-14,143**		**-**	**-14,143**	
국 비	94,934	85,099	94,934	-9,835		-	-9,835	
도 비	8,138	7,275	8,138	-863		-	-863	
시 비	32,548	29,103	32,548	-3,445		-	-3,445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동일 사업비 내 편성목 변경

-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구입(재료비)

※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예산 집행잔액 활용계획 제출 및 승인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근거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21년 2분기 입식 시작으로 금년도 돼지 구제역 전업농 백신수요가 적어, 잔여예산 발생

☞ 농림부 집행잔액 활용 계획에 의거,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로 변경 사용하여 축산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계	-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206-01 재료비	·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	34,923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전업규모) =	-34,923	

□ 사업 추진계획

- 2021.01 : 사업계획 수립
- 2021.01~2021.12 : 축산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
  · 4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상반기),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배부
  · 8월 돼지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배부(상시접종분)
  · 10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하반기),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배부
- 2021.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해당없음(2020 신규사업)	
2020년	일제접종 3회 및 소규모농가용 구제역 백신 15,000두분 구입	
2021년	상반기 백신 일제접종 실시 및 소규모농가 백신 8,500두분 구입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해	당	없	음	
2020년	135,620	107,440		28,180	
2021년	121,477	12,028		109,449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가축방역팀장 박용준	담당자	수의7급 신문주	전화	5952

[가축전염병 재난 피해농가 복구(폐업농가 철거비 지원)] (P - 22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9월 ~ 12월 ○ 위 치 : 통진읍 가현리 800 등 3개소

○ 사업규모 : 4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ASF 발생 관련 살처분 후 폐업한 농가에 대한 시설 철거비용 지원으로 국가정책 협조 후 생계대책이 사라진 축산농가 재기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54,811**				**1,054,811**	**1,054,811**	
국 비								
도 비								
시 비		210,963				210,963	210,963	
기 타		843,848				843,848	843,848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ASF 살처분 후 폐업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수립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근거내용	1.「가축전염병예방법」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ASF 발생 관련 살처분 후 폐업농가에 대한 시설철거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 고
폐업농가 철거비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 철거비 1,054,811,000원 × 20%	=	210,963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2. : 기본계획 수립(농가별 비교견적 실시)
- 2021.03. :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
- 2021.04. ~ 2021. 09. : 추진계획수립
- 2021.09. ~ 2021.11. : 사업집행
- 2021.11. ~ 2021.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1년	해당없음(신규사업)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년	해당없음(신규사업)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가축방역팀장 박용준	담당자	수의7급 신문주	전화	5952

(야생조수 차단사업) (P - 22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5 ~ 2021. 12.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철새 이동을 유도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가금농가 밀집지역으로 야생조수 이동 및 고병원성 AI 항원 전파를 차단하여 가금농가의 고병원성 AI 발생 억제 추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0,000**				**240,000**	**240,000**	
국 비								
도 비		72,000				72,000	72,000	
시 비		168,000				168,000	168,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1 고병원성AI 발생 관련 질병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에 따른 예산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근거내용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야생철새(오리·기러기류)에 의한 가금농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농장내 바이러스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철새 이동유도 전담반 용역사업 추진 필요

○ 과거 발생지역 및 가금밀집 사육 고위험 지역 중심으로 철새 이동 유도사업 추진으로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 및 차단효과



※ 가금밀집지역, 질병 발생지역 , 철새도래지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 레이저 기기 등를 이용 철새 이동 유도, 철새 종류, 개체수 및 서식환경 등 생활상 모니터링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는 레이저 방역 사업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야생조수 차단사업	시설비 401-01	o 2개소 용역비 60,000천원 × 4개월	240,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1.06. : 기본계획수립 및 보조금 내시
- 2021.08. ~ 2021.10. : 사업 대상자 공모 및 선정
- 2021.10. ~ 2021.12.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1년	해당없음(신규사업)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년	해	당	없	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수의7급 이정희	전화	2826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폐업지원금] (P -22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2월 ○ 위 치 : 월곶면 갈산리 40-2 등 2개소

○ 사업규모 : 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에서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농가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ASF 재발발지 효과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35,640**				**835,640**	**835,640**	
국 비		584,948				584,948	584,948	
도 비		75,207				75,207	75,207	
시 비		175,485				175,485	175,485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ASF 살처분 후 폐업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수립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의2(폐업 등의 지원)
근거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축산법」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ASF 중점방역지구 지정 후 시설운영이 불가능한 농가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 기준*에 의거, 2년간 순수익액을 폐업지원하고, 해당 가축(돼지)에 대한 가축사육업 폐업신고

* 일관농장 71,898원/두(출하 연 5,477두 한도), 비육농장 49,650원/두(출하 연 9,863두 한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 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폐업지원금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지원금 835,640,000원 =	835,64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4. : 사업계획 수립
- 2021.05. :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 2021.06. ~ 2021.07. : 폐업지원금 사업 신청농가 현장조사 실시
- 2021.09. ~ 2021.10. : 사업예산 수립 및 폐업 확인 후 집행
- 2021.11. ~ 2021.12.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1년	해당없음(신규사업)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년	해당없음(신규사업)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가축방역팀장 신철우	담당자	수의7급 신문주	전화	5952

(김포대명항 지원) (P - 22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위 치 : 대명항

○ 사업규모 : 운영비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대명항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한 어업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0,007**	**194,358**	**88,539**	**122,512**		**-16,693**	**114.351**	
국 비								
도 비								
시 비	80,007	194,358	88,539	122,512		-16,693	114.351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액

○ 대명항 주차타워 개방연기에 따른 전기, 소방 안전관리 수수료 미사용액 감액(4개월분)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어항관리조례	제11조 제2항
근거내용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20년 12월 완공된 대명항 주차장 공작물 경기도로부터 어항관리청인 김포시로 관리 전환됨

○ 2021년 1월 주차타워 개방 문제점 운영회의 결과 김포시와 시공사간 안전시설 분담 설치 추진

- 김포시 : 2층 미끄럼 방지, 안전표지판, 차선변경도색 설치
- ㈜원피앤디 : 2층난간, 1층 우수배관, CCTV설치

○ 주차타워 관리를 위한 전기, 소방 안전관리대행 운영비 및 안전시설비 1회 추경 반영하여 설치 완료

○ 시공사 ㈜원피앤디 필수 안전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주차타워 개방연기로 운영비 미사용액 발생분 반납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공 통				
김포대명항 지원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김포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대명항) =	-16,693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12. : 어항시설관리 현황보고(김포도시관리공사 -> 축수산과)
- 2021.05 ~ 06. : 김포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 지급
- 2021.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위판장, 어업용창고, 급유시설 등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지급	
2020년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위판장, 어업용창고, 급유시설 등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지급	
2021년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위판장, 어업용창고, 급유시설 등 김포도시관리공사 위탁관리비 지급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39,174	128,691	-	10,483	
2020년	80,007	70,606	-	9,401	
2021년	211,051	211,051		-	8.20일기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수산팀장 조찬휘	담당자	해양수산7급 안영준	전화	2822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운영비) (P - 22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3. ~ 2021.10.　　○ 위　　치 : 김포시

○ 사업대상 : 양식장 1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60**	**-**	**-**	**-**	**560**	**560**	
국 비	-	560	-	-	-	560	560	
도 비								
시 비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운영비 배정

□ 법적근거

근거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
근거내용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물품 구입 필요

○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피해 양식어가에 바우처 100만원 지급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운영 물품 구입 =	56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3. : 사업착수
- 2021.10.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20년	-	
2021년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수급 (1어가)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수산팀장 조찬휘	담당자	행정8급 천혜림	전화	2823

(대명항 갯벌퇴적 방지시설 전원공급 전기공사) (P - 22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9. ~ 2021.12.　　○ 위　　치 : 김포시

○ 사업대상 : 대명항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대명항 갯벌 퇴적 방지 시설을 운영하여 어항 시설 정비여건 개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000**				**30,000**	**30,000**	
국 비								
도 비								
시 비		30,000				30,000	30,00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대명항 갯벌퇴적 방지대책 수립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 경기도에서 9월경 설치 예정인 갯벌 퇴적 방지 해수흘림시설의 전원공급 전기공사 필요

○ 지방어항 지정권자인 경기도에서 지방어항 관리청인 우리시에 갯벌 퇴적 방지시설 전원공급 및 관리 운영 요청

□ 법적근거

근거법령	어촌어항법	제49조
근거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법에 따른 어촌어항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대명항 갯벌 퇴적현상 발생으로 항내 시설의 제한적이용 및 어항 시설의 정비여건 개선 필요

○ 경기도에서 설치 예정인 대명항 갯벌퇴적 방지 시설 전원공급 전기공사 실시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계		30,000	
대명항 갯벌퇴적 방지시설 전원공급 전기공사	401-01 시설비	· 제어반 전원공급 전기공사 1식	=	24,690	
		· 한국전력공사 시설 부담금	=	5,31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9. : 사업착수
- 2021.12. : 준공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1년	해당없음(신규사업)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년	해	당	없	음	

□ 위치도 및 현장사진(해당없을시 미제출)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수산팀장 조찬휘	담당자	해양수산7급 안영준	전화	2822

(사무용 가구 구입) (P - 22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9. ○ 위 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 사업규모 : 사무용 가구(3명분)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직원증원에 따른 사무환경 조성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02**				**1,802**		
국 비								
도 비								
시 비		1,802				1,802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하반기 인사발령(증원)에 따른 사무환경 조성(책상, 의자, 탁자 등 구입)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근거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환경 조성(책상, 의자, 탁자 등 구입)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계			1,802	
사무용 가구 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책상	120,000원 × 3개	=	360	
		· 이동서랍	147,500원 × 3개	=	443	
		· 회의용 탁자	227,400원 × 1개	=	228	
		· 의자	210,000원 × 3개	=	630	
		· 책상유리	44,000원 × 3개	=	132	
		· 조달수수료	8,960원	=	9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9. : 물품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해당없음)

○ 최근3년 집행현황(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수산과	축산팀장 최근식	담당자	행정6급 서원일	전화	281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 업 설 명 서

농업진흥과

(한강솔솔 큐어파크 활성화) (P - 22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09. ~ 2021. 12.　　○ 위　　치 : 김포시 일원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모델 구축 및 거점 확보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2,000**	-	-	-	**12,000**	**12,000**	
국 비	-	-	-	-	-	-	-	
도 비	-	-	-	-	-	-	-	
시 비	0	12,000	-	-	-	12,000	12,000	
기 타	-	-	-	-	-	-	-	

□ 예산 증감사유

○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First』 특별조정금 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 법적근거

근거법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10조
근거내용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치유농업 거점 확보와 활성화를 통해 녹색 복지서비스 제공 및 치유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 치유 인프라 구축 및 김포형 치유농업 모델 정립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한강솔솔 큐어파크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 한강솔솔 큐어파크 운영 세부계획 수립			
		· 사업추진단 운영 및 자문 : 500,000원*6회	=	3,000	
		· 치유농업 관련 도서 구입 : 50,000원 * 20권	=	1,000	
		· 치유농업 홍보물 제작 : 1,000,000원 * 3종	=	3,000	
	201-03 행사운영비	◎ 치유농업 심포지엄			
		· 강연자 수당 지급 : 500,000원*5명	=	2,500	
		· 행사 장비(무대, 음향) 임차 : 2,000,000원*1식	=	2,000	
		· 운영물품 : 500,000원	=	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06. :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First』 공모사업 우수상
- 2021. 06. : 한강 솔솔 큐어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21. 09. ~ 11. : 사업추진단 운영 및 자문
- 2021. 10. : 치유농업 심포지엄 개최
- 2021. 11. ~ 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담당자	농촌지도사 진민영	전화	5082

치유농업상담소 운영 (P - 22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위 치 : 치유농업센터(김포시 돌문로 51)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다양한 치유 및 도시농업 수요층을 대상으로 농업기술보급을 통한 농업 가치 확산과 치유농업에 대한 업무 능동적 대처로 김포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57,020**	**60,000**	**50,000**	-	**47,020**	**157,020**	
국 비	-	-	-	-	-	-	-	
도 비	-	-	-	-	-	-	-	
시 비	0	157,020	60,000	50,000	-	47,020	157,020	
기 타	-	-	-	-	-	-	-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치유농업센터 개설 및 운영에 따른 사무용 자산(의자, 책상, 캐비넷 등) 취득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효과의 정량적 측정을 위한 측정기 구입

□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촌진흥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제21조 제3조 제1, 2항
근거내용	제2조 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치유농업센터 개설 및 운영에 따른 사무용 자산(의자, 책상, 캐비넷 등) 취득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효과의 정량적 측정을 위한 측정기 구입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치유농업 상담소운영	405-01 자산취득비	- 사무공간			
		· 사무용책상 250,000원*5개=1,250,000원	=	10,000	
		· 사무용보조책상 200,000원*5개=1,000,000원	=	1,250	
		· 사무용의자 270,000원*5개=1,350,000원	=	1,000	
		· 사무용서랍(이동용)160,000원*5개=800,000원	=	1,350	
		· 사무실파티션 2,000,000원	=	800	
		· 캐비닛 300,000원*8개=2,400,000원	=	2,000	
		· 책장 200,000원*5개=1,000,000원	=	2,400	
		· 스트레스 측정기 : 5,000,000원*2종=10,000,000	=	1,000	
		- 회의 및 교육 공간			
		· 회의용탁자 300,000원*2개=600,000원	=	600	
		· 회의용의자 200,000원*8개=1,600,000원	=	1,600	
		· 교육용책상 260,000원*12개=3,120,000원	=	3,120	
		· 교육용의자 150,000원*24개=3,600,000원	=	3,600	
		· 전자교탁 3,400,000원	=	3,400	
		· 강연대 350,000원*1개=350,000원	=	350	
		· 빔프로젝트 2,000,000원*1개=2,000,000원	=	2,000	
		· 스크린 350,000원*1개=350,000원	=	350	
		· 음향장비 8,000,000원	=	8,000	
		· 교육용 컴퓨터 1,000,000원	=	1,000	
		· 제습기 600,000원*2대=1,200,000원	=	1,200	
		· 안내간판제작 2,000,000원*1종=2,000,000원	=	2,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1.01. : 기본사업추진계획수립
- 2021.01. ~ 2021.11. : 사업추진 및 치유농업센터 시설개선
- 2021.11. ~ 2021.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 치유농업센터 부서 신설(2021. 1. 4.) 및 치유농업 관련 조례 제정(2021. 3.31.) • 치유농업 인프라 제공 : MOU 체결 2건, 치유농업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 175회 •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 연구회 창립(2021.3.31.) 및 운영(42명, 5회) • 치유농장 육성 및 농장주 역량강화, 네트워킹 구축 : 5개소 등 •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8개소 등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110,000	94,691		15,309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치유농업센터장 서이현	담당자	농촌지도사 서이현	전화	4221

(소비자 농촌체험 운영) (P - 22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3개분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농촌체험활동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 및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6,000**	**59,220**	**60,000**	-	-	**-780**	**-26,780**	
국 비	-	-	-	-	-	-	-	
도 비	-	-	-	-	-	-	-	
시 비	86,000	59,220	60,000	-	-	-780	-26,780	
기 타	-	-	-	-	-	-	-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도농교류활동의 지원)
근거내용	**제5조 (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농교류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6항)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사업내용

○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따른 비대면 농촌체험 관광 활력화 사업 추진

○ 타겟 고객(유치원·초등학교·일반소비자) 대상별 농촌체험 패키지 홍보 및 운영

○ 농촌체험분야 연구회 및 빰빰투어 농장주 역량강화를 통한 농촌체험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체험장 육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소비자 농촌체험 운영	301-09 행사실비지원금	· 농촌체험분야 역량강화교육 간식비 :(경정)3,000원*30명*8회-(기정)3,000원*50명*10회	=	-780	경정액 720 기정액 1,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기본계획수립
- 2021.02~2021.05 : 빰빰투어 농가 역량강화 교육 및 운영기반 네트워크 조성, 농촌체험 전문가 육성
- 2021.05~2021.11 : 농촌체험 패키지 홍보 및 운영
- 2021.11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접경지역 체험마을 및 체험학습연구회 역량강화 교육: 10회 • 호박터널 경관 조성 : 1개소 • 농촌체험관광 패키지 개발 : 6개코스 16개소 • 미래 농업 성장을 위한 도농상생 농담토크 개최 : 1회 120명	
2020년	• 비대면 농촌체험 방콕놀이 프로그램 운영 : 3회 300명 • 빰빰투어 신규농가 선정 7개소, 인증패 제작 23개소 • 농촌체험관광 로고 제작 : 1종 • 농촌체험관광 패키지 빰빰투어 홍보용품 제작 : 리플렛 등 2종 • 농촌체험학습연구회 역량강화 교육 : 2회	
2021년	• 농촌체험관광 패키지 활성화 신규농장 선정·추가 : 4개소('20 23개소 → '21 27개소) • 농촌체험관광 전담조직(빰빰투어 사업추진단) 구성 : 1개회 • 농장주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 : 15회 140명 • 타겟별 소비자 농촌체험관광 운영 : 12개소 181명 • 코로나19 대응 농촌체험농장 운영 활성화 「DIY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 15회 790명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5,000	30,760	-	4,240	
2020년	86,000	58,702	-	27,298	
2021년	60,000	44,722		15,278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강효정	담당자	농촌관광팀장 강효정	전화	5074

귀농귀촌 창업 교육 지원 (P - 22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위　　치 : 치유농업센터(김포시 돌문로 51)

○ 사업규모 : 2개분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스타트업 창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농 육성 기반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00**	**0**	**10,000**	-	-	**-10,000**	**0**	
국 비	-	-	-	-	-	-	-	
도 비	-	-	-	-	-	-	-	
시 비	10,000	0	10,000			-10,000	0	
기 타	-	-	-	-	-	-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기본) 취소로 예산 **전액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제4조
근거내용	**제4조(귀농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사업내용

○ 농촌지역 조기 적응 및 농업분야 창업의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 귀농귀촌인에게 관심있는 분야의 기술 습득, 경영기법, 정착과정 상담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귀농귀촌 창업교육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교육 교재 및 운영용품 : (기정)350,000원*2개분야 =	-700	감액10,000
	201-03 행사운영비	·귀농귀촌 기본 교육 : (기정)300,000원*10회 = ·귀농귀촌 현장 실습 교육:(기정)250,000원*24회 =	-3,000 -6,000	
	301-09 행사실비보전금	·귀농귀촌 교육 간식비:(기정)3,000원*25명*4회 =	-3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2021.02. : 기본계획수립
- 2021.03. ~ 2021.11. : 교육과정 추진, 사업대상자 확정 및 추진 등
- 2021.11. ~ 2021.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치유농업센터장 서이현	담당자	농촌지도사 황성필	전화	4223

도시농업육성 지원 (P - 22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위　치 : 치유농업센터(김포시 돌문로 51) 및 관내 도시농업 현장 등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도시민의 농사활동을 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녹색 생활공간 조성으로 선진문화 주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000**	**100,000**	**100,000**	-	-	**0**	**0**	
국 비	-	-	-	-	-	-	-	
도 비	30,000	30,000	30,000	-	-	0	0	
시 비	70,000	70,000	70,000	-	-	0	0	
기 타	-	-	-	-	-	-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및 비대면 교육 탄력추진에 따라 활용가능한 통계목으로 변경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근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해당없음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공동체 회복 및 농심함양

○ 영농경험이 부족한 도시민에게 도시농업 교육 및 농업기술 보급으로 농업 인식 제고 및 만족도 향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도시농업육성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도시농업운영 및 교육지원 용품 : 600,000원*1회	=	600	
	301-09 행사실비지원금	· 교육생 식대 : (경정)8,000원*75명*1회-(기정)8,000원*30명*5회	=	-600	경정액600 기정액1,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1.01~2021.02 : 추진계획수립, 사업대상자 모집, 현지조사 및 심의 상정
- 2021.01~2021.03 : 교육생 모집,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전교육
- 2021.04~2021.11 : 사업추진
- 2021.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주말농장 활성화 및 시영 도시텃밭 퇴비 구입 • 텃밭정원 조성 및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 : 19회, 382명 • 미래 농업 성장을 위한 도농상생 농담토크 개최 : 1회, 120명 • 도시농업 홍보용품 제작 : 손수건 1,000장, 달력 1,000개	
2020년	• 도시농업 교육 실습텃밭 및 공영도시농업농장 퇴비 구입 • 시영도시텃밭 조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개소, 5회, 72명 •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 14회, 153명 • 도시농업 관련사업 현장교육 : 14회, 506명	
2021년	• 도시농업 교육 실습텃밭 및 공영도시농업농장 퇴비 구입 • 공영 및 시영도시텃밭 조성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개소, 13회 •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 : 12명, 17회 • 토종농법과 함께하는 치유농업 어울모임 : 1회, 50명 • 치유 및 도시농업관련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 5회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0,000	49,711		289	
2020년	100,000	68,985		31,015	
2021년	100,000	63,531		36,469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치유농업센터장 서이현	담당자	농촌지도사 정세희	전화	4222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P - 22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위　치 : 치유농업센터(김포시 돌문로 51) 및 관내 도시농업 현장 등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신규농업인(귀농귀촌)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농업인력 육성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5,000**	**20,000**	**20,000**	-	-	**0**	**-5,000**	
국 비	12,500	10,000	10,000	-	-	0	-2,500	
도 비	3,750	3,000	3,000	-	-	-	-750	
시 비	8,750	7,000	7,000	-	-	0	-1,750	
기 타	-	-	-	-	-	-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대면 및 비대면 교육 탄력추진에 따라 활용가능한 통계목으로 변경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제4조(귀농인 지원사업)
근거내용	①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4항)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해당없음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신규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체계적인 기초 영농교육 지원

○ 신규농업인-지역 기술보급전문가-전문 농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 농업기술+농업경영+창업까지 일관화한 맞춤형 학습 실시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교육지원	201-03 행사운영비	·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 운영 : 1,240,000원*1개과정	=	1,240	
	301-09 행사실비지원금	· 기초영농교육 급식비 : (기정)8,000원*40명*2회	=	-640	기정액1,240
		· 기초영농교육 다과비 : (기정)3,000원*40명*2회	=	-6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1.01. : 기본계획수립
- 2021.01. ~ 2021.02. : 교육생 모집, 영농현장 체험실습 분야 조율
- 2021.03. ~ 2021.12. :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현장 체험실습 추진

※ 영농기초기술교육 : 엘리트농업대학 귀농귀촌학과 연계 실시

※ 영농현장 체험실습 : 귀농귀촌인 대상 농업 체험 및 실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27,500천원(국비 13,750, 도비 4,125 시비 9,625) • 규 모 : 1개회 35회 37명(엘리트농업대학 귀농귀촌반) • 주요내용 :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기초영농기술 교육, 귀농귀촌 동향 및 농업환경 이해 주요병해충 이해 및 작물보호제 사용, 지역특화작목 재배기술 및 실습 텃밭작물 재배 실습(990㎡)	
2020년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25,000천원(국비 12,500, 도비 3,750 시비 8,750) • 규 모 : 1개회 20회 21명(귀농귀촌학교) • 주요내용 : 작물 기초영농기술 교육, 김포 농업의 이해, 가공 실습, 귀농귀촌 경영전략, 지역특화작목 재배기술 및 실습, 텃밭작물 재배 실습(990㎡)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 실습 200㎡	
2021년	• 사업기간 : 2021. 1 ~ 현재 • 사 업 비 : 25,000천원(국비 12,500, 도비 3,750 시비 8,750) • 규 모 : 1개회 10회 38명(엘리트농업대학 귀농귀촌반) • 주요내용 : 작물 기초영농기술 교육, 김포 농업의 이해, 가공 실습, 귀농귀촌 경영전략, 지역특화작목 재배기술 및 실습, 텃밭작물 재배 실습(990㎡)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 실습 200㎡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7,500	27,500		0	
2020년	25,000	25,000		0	
2021년	20,000	4,307		15,693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치유농업센터장 서이현	담당자	농촌지도사 황성필	전화	4223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P - 22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위　치 : 치유농업센터(김포시 돌문로 51) 및 관내 도시농업 현장 등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신규농업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농업인 맞춤형 지원 거점 육성과 창업 설계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조성으로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000**	**45,000**	**45,000**	-	-	**0**	**15,000**	
국 비	9,000	13,500	13,500	-	-	0	4,500	
도 비	6,300	9,450	9,450	-	-	-	3,150	
시 비	14,700	22,050	22,050	-	-	0	7,350	
기 타	-	-	-	-	-	-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대면 및 비대면 교육 탄력추진에 따라 활용가능한 통계목으로 변경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제4조(귀농인 지원사업)
근거내용	①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4항)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해당없음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초영농기술 교육 및 현장실습형 귀농교육과 연계한 귀농창업 설계 지원

○ 농업분야 스타트업 창업교육(영농기술 기반)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 창업전문가를 통한 창업기술 자문·컨설팅, 소자본 창업실행 지원

○ 우수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권리화(지적재산권 등) 지원 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교육지원	201-03 행사운영비	· 귀농창업교육 운영 : 1,080,000원*1개과정	=	1,080	
	301-09 행사실비지원금	·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교육 다과비 : (경정) 3,000원*40명*1회-(기정) 3,000원*40명*10회	=	-1,080	경정액 120 기정액 1,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1.01. : 기본계획수립 및 교육생 모집
- 2021.02. ~ 2021.05. : 귀농창업 비즈니스모델개발교육 실시(귀농창업 비즈니스모델 발표)
- 2021.05.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심의 상정
- 2021.05. ~ 2021.11. :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시범사업 추진
- 2021.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사 업 비 : 30,000천원(국비 9,000, 도비 6,300, 시비 14,700) • 규 모 : 2개분야 • 주요내용 - 귀농창업 교육 : 1개과정 10회 198명(창업 아이디어 도출, 귀농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농산업 창업 트렌드 이해 등) - 귀농귀촌 창업지원 시범사업 : 2개소 · 이강우(월곶면 갈산리) 농장컨설팅, 저지수정란 구입 · 김명신(하성면 석탄리), 농장조성, 홍보간판 및 홍보물품 제작 등 - 귀농 농작업안전 홍보물 제작 : 14종 400개	
2020년	• 사 업 비 : 30,000천원(국비 9,000, 도비 6,300, 시비 14,700) • 규 모 : 2개분야 • 주요내용 - 귀농창업 교육 : 1개과정 14회 117명(창업 사업화 및 비즈니스모델, 농업환경의 이해와 농업 정착 설계) - 귀농귀촌 창업지원 시범사업 : 2개소 · 전영준(대곶면 송마리) 다육이 종묘 구입, 상토 등 구입 · 옥민석(대곶면 대벽리) 수제 에그타르트 판매 재료 구입 - 귀농 농작업안전 홍보물 제작 : 300개	
2021년	• 사 업 비 : 45,000천원(국비 13,500, 도비 9,450, 시비 22,050) • 규 모 : 2개분야 • 주요내용 - 귀농창업 교육 : 1개과정 16회 127명(창업 사업화 및 비즈니스모델, 농업환경의 이해와 농업 정착 설계) - 귀농귀촌 창업지원 시범사업 : 2개소 · 윤선우(통진읍) 마을공동생산물 공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용품 등 · 허영태(하성면) 작두콩차 생산 및 판매 용품 등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0,000	30,000		0	
2020년	30,000	29,986		14	
2021년	45,000	19,502		25,498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치유농업센터장 서이현	담당자	농촌지도사 황성필	전화	4223

(생활기술교육) (P - 22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12월 ○ 위 치 : 농업기술센터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수요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기술습득 및 창조적 인재양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200**	**7,000**	**27,000**	-	-	**-20,000**	**-200**	
국 비	-	-	-	-	-	-	-	
도 비	-	-	-	-	-	-	-	
시 비	7,200	7,000	27,000			-20,000	-200	
기 타	-	-	-	-	-	-	-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연구회 과제교육 예산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제21조
근거내용	제2조 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사업내용

○ 농촌부존자원 활용 생활·전통기술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전통문화 보존

○ 연구회 육성으로 연구회 역량강화 및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 전개

○ 생활에 유용한 전문기술교육을 관내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창작·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역할 도모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 홍보로 도농교류 활성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생활기술교육	201-03 행사운영비	· 생활기술교육 강사비 :(경정)200,000원*5회 - (기정)300,000원*40회	=	-11,000	경정액7,000 기정액27,000
		· 생활기술교육 교육운영비 :(경정)300,000원*10회 - (기정)300,000원*40회	=	-9,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추진계획수립
- 2021.01 ~ 2021.12 : 사업집행
- 2021.11 ~ 2021.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생활기술분야 연구회 과제교육 및 현장교육 견학 등 지원 • 도시민대상 농식품 및 전통생활기술 교육 • 6차산업 활성화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교육	
2020년	• 전통문화연구회 및 완초공예연구회 교육 4회 • 로하스연구회 및 향토음식연구회 교육 2회 • 농촌자원개발연구회 회의 및 교육 3회	
2021년	• 전통문화연구회 회의 및 교육 6회 • 농촌자원개발연구회 회의 및 교육 3회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0,000	19,914		86	
2020년	7,200	1,804		5,396	
2021년	27,000	2,984		24,016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강효정	담당자	농촌지도사 박지훈	전화	5084

(생활개선 전문인력양성) (P - 22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12월 ○ 위 치 : 농업기술센터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식정보사회에서 다양한 역할 확대에 따른 농촌여성의 창의적 역량함양과 전문능력 배양 자기개발 및 전문능력 함양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800**	**10,800**	**13,110**	-	-	**-2,310**	**3,000**	
국 비	-	-	-	-	-	-	-	
도 비	-	-	-	-	-	-	-	
시 비	7,800	10,800	13,110			-2,310	3,000	
기 타	-	-	-	-	-	-	-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교육 급식비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제21조
근거내용	제2조 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사업내용

○ 농촌지역 여성농업인 학습 조직체 활동 지원을 통한 농촌여성 역량개발 및 리더양성

○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농촌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능력함양 교육 및 지역 전통생활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 창업 능력 배양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생활개선 전문인력양성	301-09 행사실비지원금	·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등 급식비 : (기정)8,000원*7개회*30명*1회 = ·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등 간식비 : (기정)3,000원*7개회*30명*1회 =	-1,680 -630	감액2,31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추진계획 수립
- 2021.02~2021.12. : 교육 추진
- 2021.12: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읍면동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 생활개선회 한마음수련대회 추진(도,중앙,자체행사 등) • 재능기부 활동을 위한 합창단 교육 지원 등(강사비, 물품 등)	
2020년	• 읍면동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 생활개선회 한마음수련대회 추진(도,중앙,자체행사 등) - 코로나19로 행사불가 • 재능기부 활동을 위한 합창단 교육 지원 등(강사비, 물품 등)	
2021년	• 읍면동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 재능기부 활동을 위한 공동과제포 운영 지원 등(강사비, 물품 등)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0,500	20,450	-	50	
2020년	7,800	4,349		3,451	
2021년	13,110	3,953		9,157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강효정	담당자	농촌지도사 김승현	전화	5075

(신세대 농업인력양성) (P - 22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위 치 : 농업기술센터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4-H회원의 지식농업경영 기반확립을 통한 차별화된 농업경쟁력 향상
지역현장 중심으로 내실 있는 지역 중심의 4-H육성 및 활성화 추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375**	**4,200**	-	-	**-3,825**	**375**	
국 비	-	-	-	-	-	-	-	
도 비	-	-	-	-	-	-	-	
시 비	0	375	4,200			-3,825	375	
기 타	-	-	-	-	-	-	-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과제교육(대면활동) 예산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제21조
근거내용	**제2조 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4-H회원의 농심함양을 도모하고, 농업교육을 통해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 제고

○ 농업과 농촌에 대학 애착심을 배양함으로서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신세대 농업인력양성	201-03 행사운영비	·4-H회원 과제교육 :(경정)375,000원 - (기정)300,000원*10회 =	-2,625	경정액375 기정액3,000
	301-09 행사실비지원금	·4-H회원 교육 등 참가보상 :(기정)30,000원*3명*10회 =	-900	
		·4-H회원 교육 등 간식비 :(기정)3,000원*10명*10회 =	-3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추진계획수립
- 2021.01~2021.09 : 교육 추진
- 2021.10~2021.11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4-H의식과 농심함양을 위한 과제교육 및 수련대회 추진 · 4-H 도·중앙단위 교육, 행사 참석 등	
2020년	· 코로나-19 영향으로 4-H 과제교육 및 행사 등 실시 불가	
2021년	· 4-H연합회 연시총회 및 교육 추진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700	7,700	-	-	
2020년	-	-	-	-	
2021년	4,200	375		3,825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교육정보팀장 양승호	담당자	농촌지도사 전찬영	전화	5087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지원사업(기금) (P - 22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1월　　○ 위　　치 : 김포시농업기술센터(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전문경영인 활동 활성화 및 품목별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업미래 선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	**2,000**	-	**2,000**	-	**0**		
국 비	-	-	-	-	-	-	-	
도 비	-	2,000	-	2,000	-	0		
시 비	-	-	-	-	-	-	-	
기 타	-	-	-	-	-	-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교육 진행 어려움에 따라 활용가능한 통계목으로 변경

□ 법적근거

근거법령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제18조, 제21조
근거내용	**제2조 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해당없음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최신 농업기술, 영농정보 제공 등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품목별 전문화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 역량개발, 신농업기술 정보 습득 등을 통해 초보농업인 대상 지식전파로 지역농업발전 유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교재비 : 20,000*22부	=	440	
	301-03 행사실비지원금	· 교육 급식비 : (기정)8,000원*55명	=	-44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4. : 추진계획수립
- 2021. 4. ~ 2021. 11. : 사업추진 및 집행
- 2021. 11.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담당자	농촌지도사 정세영	전화	5081

맑은물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 업 설 명 서

하수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P - 23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2021. 12 ○ 위 치 :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 사업규모 : 김포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 외 사업비 지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민에게 안정적 하수공공서비스 제공 및 지방하수도 건정재정 유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625,618**	**11,013,000**		**5,243,000**		**5,770,000**	**4.387,382**	
국 비								
도 비								
시 비	6,625,618	11,013,000		5,243,000		5,770,000	4,387,382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전년대비 통진레코파크 증설사업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월곶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의 계속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소요예산 필요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1항
근거내용	**제14조(독립채산)**①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	반영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년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 지방하수도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지급금 일반회계에서 전환

○ 관내 각종 개발사업, 유입인구 증가로 하수처리 소요량이 증대됨에 따른 신규 재정사업(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 대규모 투자사업(BTO,BTL)으로 인한 운영비 및 미지급금 상환 등으로 인한 부족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계		5,770,000	
	701-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	40,000	
	701-03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	5,73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 김포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 외 사업비 지원, 하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	
2021년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 통진레코파크 증설사업 및 하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추진	8.2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6,625,618	6,625,618		0	
2021년	5,243,000	5,243,000		0	8.2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하수과	하수행정팀장 김태우	담당자	행정6급 장영노	전화	5422